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 인 순 의원)

의 안 번 호	25-28
------------	-------

발의년월일: 2025. 3. .

발의자: 권인순, 강동오, 김승수,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차해영,
채우진, 홍지광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 및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축산법」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11호
- 「축산법」 → 「축산법」 제2조제6호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관계법령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3. 27. ~ 4. 2.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로, “시민보건향상”을 “주민보건 향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소속된 시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의한”을 “따

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u>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u>,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 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u>시민보 건향상</u>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u>사 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u> 다만, 애완 또는 방법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u>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조례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에 따라</u> ----- ----- ----- <u>주민보 건 향상</u>-----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u>사 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u> -----.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 정 등)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 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u>

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
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
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
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
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제3조(사육허가) -----

구청장-----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 그 밖에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에 따라 -----
----- 별지 제1호서식----- 각 호-----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2. (생략)

② (생략)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
----- 따른 -----

수 있다.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u>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u>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②----- ----- ----- ----- ----- ----- <u>법 제8조제3항에 따라</u> ----- ----- ----- -----. <u><삭 제></u>
--	--

【관 계 법 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축분뇨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

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김가은
연 락 처	02-3153-8543